

대구용산자이

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공급안내

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의거 일반공급 당첨자의 부적격 소명불가 세대와 미계약 세대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동·호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으로, 아래와 같이 최초 예비입주자 선정 및 추첨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대구용산자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예정으로 공고하였으며,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방식을 방문 접수로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. 이에 따라 2020. 6. 26 ~ 6.30.(5일간) 당사 홈페이지(<http://www.daegyongsan-xi.com/>)에서 서류검수 예약 접수를 진행 할 예정 이오니 당첨자 분들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진행 하시고, 정해진 시간에 구비서류와 함께 내방 부탁드립니다.

■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공급안내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공급가능 주택형 및 유의사항 | <p>84㎡A, 84㎡B, 84㎡C, 100㎡ 타입 ※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(적격성 판단 서류)를 제출하시고 적격자로 판명되어 예비입주자 공급(추첨)일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예비입주자 순번 및 주택형별 미계약 물량에 따라 동·호수 추첨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.</p> <p>① 방문일자 예약(홈페이지) → ② 견본주택 내방 서류제출(적격성 판단) → ③ 추첨 (7/9 목요일, 견본주택 내방) → ④ 계약진행 (7/10 금요일, 견본주택 내방) 6/26(금)-6/30(화) 6/29(월)-7/1(수)-예약날짜에 내방 타입별 추첨시간 확인 계약진행</p> |
| 최초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추첨일시 및 신청서 마감 | <p>일시 : 2020년 7월 9일 (목) - 84㎡A 타입 : 14시 00분까지 입장 (예비순번 1번 ~ 40번 까지) - 84㎡B 타입 : 14시 00분까지 입장 (예비순번 1번 ~ 55번 까지) - 84㎡C 타입 : 14시 00분까지 입장 (예비순번 1번 ~ 35번 까지) - 100㎡ 타입 : 14시 00분까지 입장 (예비순번 1번 ~ 6번 까지)</p> <p>※ 최초 추첨참가 예비순번 안내 - 공급물량 제한으로 최초 예비입주자 추첨에는 상기 타입별 예비순번(부적격자 및 서류 미제출자 제외) 까지만 참석 및 추첨을 진행 합니다. - 금회 추첨 이후 잔여 공급물량이 발생할 경우 차순번의 예비입주자에게 추가 안내하여 추첨 및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</p> <p>※ 각 타입별 추첨시간까지 추첨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분만 예비입주자 동·호수 추첨이 가능하며, 추첨시간이 경과한 경우 입장 및 추첨참가가 제한됩니다.</p> <p>※ 추첨 당일 혼잡이 예상되어, 견본주택 입장은 당첨자 외 동반1인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나 되도록 당첨자(대리인) 1인만 입장을 부탁드립니다.</p> <p>※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, 만차시 주차가 불가능합니다. ※ 개인사정에 따른 입장시간 초과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</p>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동·호배정 되신 예비입주자 분들은 7월 9일 (목) 오후 4시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 입금 후 7월 10일 (금) 오후 5시까지 계약서 미 출력시 계약 포기로 간주됩니다.</p> |
| 추첨 및 계약장소 | 대구광역시 두류동 135-4 대구용산자이 견본주택 |
| 계약일 | 일시 : 2020년 7월 10일 (금) |

※ 예비입주자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타입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동·호수를 배정하며, 최초 예비입주자 선정 추첨 참가를 통보하였음에도 추첨에 불참하신분은 별도의 통보없이 그 지위가 소멸되며, 신청하신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추첨 및 계약체결 필요사항

| 구분 | 추첨 참가 필요사항 | 계약 체결 필요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본인 방문시 | ▷ 신분증 | ▷ 계약금(아파트, 별도품목) 온라인 이체 준비 ▷ 신분증 ※ 견본주택에서는 현금수납이 불가하며, 당첨된 동·호수에 따라 계약금 이상이 하오니, 온라인 이체 준비만 하시기 바랍니다. ▷ 인감증명서(본인발급) 1통 및 인감도장 ▷ 서류검수기간 미제출 서류 (해당자만) |
| 대리인 추가 구비사항 (본인 외 모두) | ▷ 예비입주자의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1통(추첨 위임용) 및 인감도장 ▷ 계약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| ▷ 예비입주자의 인감증명서(본인발급) 1통(계약 위임용) ▷ 계약자 인감도장 ▷ 계약자 신분증 |

■ 유의사항

- 예비입주자 동·호수 추첨에 참가하여 동·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함. (재당첨제한기간 적용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)
-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(세대원 포함)가 금회 공급주택의 동·호수 추첨일 이전에 다른 주택의 입주자(당첨자)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해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, 동·호수 배정 추첨에 참여할 수 없음.

단,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·호수 배정일(당첨일)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, 다른 주택의 당첨 지위는 무효 처리됨.

■ 일반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

| 구분 | 서류유형 |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필수 | 추가 (해당자) | | | |
| 일반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격 확인서류 | ○ | | 서약서 | - | • 기본주택 비치 |
| | ○ |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| - | • 기본주택 비치 |
| | ○ | | 신분증 사본 | 본인 | 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)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) |
| | ○ | | 출입국 사실증명서 | 본인 | •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- 발급기간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 |
| | ○ | | 주민등록등본 | 본인 | 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| ○ | | 주민등록초본 | 본인 | 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| ○ | |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본인 | • 용도: 주택공급신청용 / 본인발급분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가 불가합니다. |
| | ○ | | 가족관계 증명서 | 본인 및 배우자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“상세”로 발급 -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유무 확인 |
| | | ○ | 주민등록등본 | 배우자 | •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| ○ | 복무확인서 | 본인 (장기복무 군인) | • 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4항에 의거,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. (다만,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) | |
|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(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) | | ○ | 무주택 소명서류 | - | •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족대장등본 포함) |
| | | ○ | | | •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|
| | | ○ | | | •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|
| | | ○ | | |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|
| | | ○ | 당첨사실 소명서류 | - | •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(당첨 사실 무효확인서,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) |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. 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인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반드시 “주민등록번호”,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, “주소변동이력 및 일자”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※ 상기 서류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